#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2183 제출연월일: 2024. 7. 24.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 내용・방 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 마트실증사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안 제49조제8항)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

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53조의4 신설)

국토교통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 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 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53조의5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3조제4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를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로, "전문위원회 또는"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만 해당한다.

제23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
- 2. 위원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의 내용· 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1.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 2. 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스마트실증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스마트실증사업"으로"를 ""스마트실증사업(제49조제8항은 제외한다)"으로"로 한다.

제8장에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4(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 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53조의5(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스마트 혁신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 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제49조제8항"을 "제49조제9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④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u>항을 처리하기</u>
에 따라 <u>전문위원회 또는</u> 지방	전문위원회(이하 "전문
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
수 있다. <u>&lt;단서 신설&gt;</u>	<u>다만, 제1호의 경우에</u>
	는 전문위원회만 해당한다.
<u>&lt;신 설&gt;</u>	1.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 내용
	·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
	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
	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스
	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의 심
	<u>의</u>
	2. 위원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

## <u>⑧</u> ~ <u>⑩</u> (생 략)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① 스 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 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 (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
증사업의 내용・방식・형태 등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7항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
<u>다.</u>
1.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
일 이내로 단축
2. 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
<u>⑨</u> ~ <u>⑪</u> (현행 제8항부터 제10
항까지와 같음)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① 스
마트실증사업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제49조제1항 및 제51 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시험 또는 의제공 또는 이용"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시험 또는 검증"으로 본다.

<신 설>

2
<u>"스마트실증사업(제49조제8</u>
항은 제외한다)"으로
세53조의4(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
49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1
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
조의3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
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
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
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다.

### <신 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0 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9조제8항에 따른 조건 또는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 5. (생략)
- ②·③ (생 략)

제53조의5(포상) 국토교통부장관
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스마트혁신기술 · 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
<u>급할 수 있다.</u>
제55조(과태료) ①
1. <u>제49조제9항</u>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홍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스마트혁신기술 ·		
1	제53조의5(포상)	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53조의5(포상)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 미만 - 포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수반되지 않음 추후 포상금을 지급을 추진하더라도 그 예산은 소액임

### 2. 상세 사유

- 제53조의5(포상)는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해당 대상에 대해 포상하고 있는 것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수반되지 않음. 추후 확대하여 포상하더라도 그 예산은 소액임
  - ※ 1명당 1,00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연 2명을 포상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평균 비용은 매우 소액임

## Ⅲ. 부대의견

#### O 해당 없음

## Ⅳ. 작성자

## O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국장
하광호	최두현	윤영중	공석

##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두현	044-201-4842	dhchoi1105@korea.kr